

『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6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6월 28일

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「구미낙동강체육공원」 내에 구성되어 있는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 (안 제3조)
- 사용허가 및 신청 (안 제5조)
-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(안 제8조)
-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(안 제9조, 제10조)
- 위탁운영 및 시설물관리대장 (안 제14조,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「구미낙동강체육공원」 내에 구성되어 있는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이용시설의 개방과 시설사용허가의 신청·제한취소·우선순위·사용시간,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·반환, 그리고 원상복구 등을 명시하고,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,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으므로, 원활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